

제 2389호
2015. 08. 1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5-6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제2015-6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 공 고
 - 제2015-541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4
 - 제2015-565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542외 3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5	2010.06.28.	마장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3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23	2015. 08.12.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41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8.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현황 (정원)	비 고
		대지	면적		
다산 어린이집	중구 동호로15길 50	1,124㎡	1,747㎡	195명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시간연장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 가.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4. 신청 제외 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다.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마.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5. 8.12.(수) ~ 2015. 9. 1.(화)

나. 접수기간 : 2015. 8. 24.(월) ~ 2015. 9. 1.(화)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가족과 (본관 1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마.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 별 사 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주민등록등본			○
공 통 사 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u>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u>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부채증명(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등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바. 제출 부수 : 18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7부)

※ 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6. 사업설명회 : 생략

※ 구청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7. 위탁조건

-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라.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마.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선정방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나. 심사항목 : 5개 분야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 「2015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 참고
- 다. 면접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PPT발표)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라.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바. 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에 공고문과 게재 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02-3396-5412)로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6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서 LPG충전시설의 과도한 안전거리 개선요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반영 조치

2. 주요내용

-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허가의 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제4조제2항”에서 “제6조제2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1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8조”로 개정(안 제2조)
 - 안전거리 가이드라인 반영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강화조건 완화를 위한 별표 개정(안 제3조 별표)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신 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한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633, FAX:3396-8765, 메일: bsc8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 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u>-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u> <u>-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u> <u>-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u>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4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6조제2항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3조 또는 제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제5조 또는 제8조 ----- ----- ----- ----- -----.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015.7.29)으로 인한 조항변경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허가 기준	비고	구분	허가 기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1호 관련 별표3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신설>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u>-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u> <u>-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 시설의 경우</u> <u>-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u>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고압 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 유가스 저장소 의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 유가스 판매사 업 및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 업자의 영업소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 스 판매 및 고압 가스 수입업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태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구 분	허 가 기 준	비 고
고압 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 유가스 저장소 의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 유가스 판매사 업 및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 업자의 영업소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 스 판매 및 고압 가스 수입업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태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